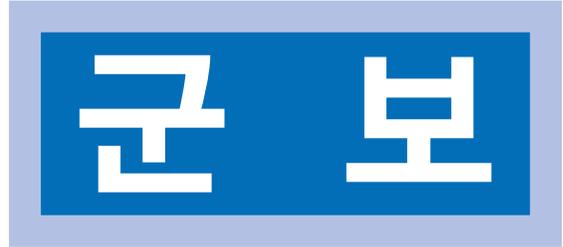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401호 2018. 7. 2 (월)

입 법 예 고

장수군 공고 제 2018 - 640호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장수군 공고 제 2018 - 645호 장수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연구과 공고 제 2018 - 01호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51

훈 령

장수군 훈령 제 550호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60

고 시

장수군 고시 제 2018 - 5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63
 장수군 고시 제 2018 - 5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64

공 고

장수군 공고 제 2018 - 611호 장수군 공인 등록(신조) 공고 69
 장수군 공고 제 2018 - 631호 도로지정 공고 70

회 람									
--------	--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228)

장수군공고 제 2018 - 640호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하는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장 수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조명탑 설치 등 시설보수에 따른 동호인 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의 시설별 명확한 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설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형식 오류사항 정비

- 1) 목적 조문 내에 단축용어 정의 오류 정비 (안 제1조, 제4조 1항)
- 2) 적용의 범위 및 정의 조항 순서 오류 정비 (안 제2조, 제3조)

나. 시설의 관리·운영상의 개선사항 정비

- 1)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일 3일 이전까지 하도록 한 것을 사용일 부터 3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하도록 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긴급사용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 정비함. (안 제6조 제1항)
- 2) 안 제2조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6조 제3항)

- 3) 사용허가 우선순위 세분화에 따른 기관, 단체의 특혜성 논란 해소 (안 제 7조 제1항)
- 4) 안 제6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정비 (제10조 제2항)
- 5) 동호인 단체 종목별 전용사용료 명확히 규정 (별표 2)

다. 상위법 위반사항 정비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의 위반사항 정비(안 제11조 제1항 제2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2018. 6. 26 ~ 2018. 7. 26(30일간)
- 나. 예산수반여부 : 부
-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26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문화체육관광사업소)
- 2) 팩 스 : 063-350-2519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7.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담당자 (전화 : 063-350-555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수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을 “장수군민” 으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 을 “체육시설” 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체육시설은” 을 “장수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은” 으로, “군민에게” 를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용 3일전” 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전”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제3조제4호” 를 “제2조제4호” 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체육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행사
5. 장수군민으로 국가·전라북도 및 장수군이 대표선수로 선발하여 경기 연습을 하는 경우

제12조제1호 중 “사용일” 을 “사용일로 부터” 로, “3일이내” 를 “사용일로 부터

3일이내” 로 한다.

별표2 1.사용료의 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

(단위 : 원)

구 분	전용사용자	사용기준	전용사용료	비 고	
실내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동호인단체	1월 (주 1회 이상, 월 4회 이상)	50,000		
실외 다목적구장, 전용구장(주간)			무료		
실외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야간)			축 구		120,000
			야 구		120,000
			테니스(공설운동장)		100,000
			테니스 (읍·면)		70,000
			공 도 장		70,000
			풋 살		70,000
			족 구		70,000
실내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65세이상 노인 동호인단체		

※ 사용기준 : 1회 = 일반사용과 같음 (부대시설사용료 포함)

※ 동호인단체 : 장수군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 일반 대관 시 우선 사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u>장수군민</u> (이하 “ <u>군민</u> ”이라 한다.)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u>장수군 체육시설</u> (이하 “ <u>체육시설</u>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장수군민----- ----- -----체육시설----- ----- ----- -----
제2조 (생 략)	제2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시설의 개방과 관리) ① <u>체육시설</u>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군민</u> 건강증진을 위하여 <u>군민</u> 에게 개방하여야 하며, <u>장수군수</u> (이하 “ <u>군수</u> ”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과 관리) ① <u>장수군 체육시설</u> (이하 “ <u>체육시설</u> ”이라 한다.)은 ----- <u>장수군민</u> (이하 “ <u>군민</u> ”이라 한다.)에게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 ① <u>체육시설</u>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u>사용 3일전까지</u> <u>군수</u>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후단 신설>	제6조(사용허가) ①----- -----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전----- ----- .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하거나 <u>군수</u>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사용일 전일까지</u>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③ 제3조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동안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월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p> <p>1. 2. (생 략)</p> <p>3. <u>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u></p> <p>4. <u>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u></p> <p>5. <u>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u></p> <p>6. <u>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u></p> <p>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3조제4호에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p> <p>1.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용료)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고지서에 의거 사용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③·④ (생 략)</p> <p>제11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체육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행사</u></p> <p>3. <u>장수군민으로 국가·전라북도 및 장수군이 대표선수로 선발하여 경기연습을 하는 경우</u></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신 설></p>	<p>제1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다만 제6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료 등 감면)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체육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행사</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③、④ (생 략)</p> <p>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p> <p>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 까지 취소、연기할 때는 전액 반환하며, 3일이내 취소、연기시에는 100분의 50 을 반환</p> <p>2.、3. (생 략)</p>	<p>5. 장수군민으로 국가、전라북도 및 장수군이 대표선수로 선발하여 경기연습을 하는 경우</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료의 반환) ----- ----- -----.</p> <p>1. -----사용일로 부터 ----- 사용일로 부터 3일 이내 ----- -----.</p> <p>2.、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p> <p>1. 사용료 일반</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용목적</th> <th rowspan="2">사용기준</th> <th colspan="2">군 민</th> <th colspan="2">군민 이외</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평 일</th> <th>휴 일</th> <th>평 일</th> <th>휴 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운동장 및 경기장</td> <td>트랙경기장</td> <td>체육활동</td> <td>1회</td> <td>무료</td> <td>무료</td> <td>15,000</td> <td>20,000</td> </tr> <tr> <td rowspan="2">축구장, 야구장</td> <td>체육활동</td> <td>1회</td> <td>15,000</td> <td>20,000</td> <td>30,000</td> <td>40,000</td> </tr> <tr> <td>일반행사</td> <td>1회</td> <td>50,000</td> <td>70,000</td> <td>80,000</td> <td>100,000</td> </tr> <tr> <td rowspan="2">실내종합체육관</td> <td>체육활동</td> <td>1회</td> <td>20,000</td> <td>30,000</td> <td>40,000</td> <td>50,000</td> </tr> <tr> <td>일반행사</td> <td>1회</td> <td>40,000</td> <td>60,000</td> <td>50,000</td> <td>70,000</td> </tr> <tr> <td rowspan="4">다목적구장, 전용구장</td> <td rowspan="2">실내</td> <td>체육활동</td> <td>1회</td> <td>10,000</td> <td>15,000</td> <td>20,000</td> <td>30,000</td> </tr> <tr> <td>일반행사</td> <td>1회</td> <td>30,000</td> <td>50,000</td> <td>40,000</td> <td>60,000</td> </tr> <tr> <td rowspan="2">실외</td> <td>체육활동</td> <td>1회</td> <td>무료</td> <td>무료</td> <td>15,000</td> <td>20,000</td> </tr> <tr> <td>일반행사</td> <td>1회</td> <td>15,000</td> <td>20,000</td> <td>20,000</td> <td>30,000</td> </tr> </tbody> </table> <p>※ 사용기준 : 1회 = 주간 4시간· 조기 3시간· 야간 4시간 이내 (부대시설사용료 별도) ※ 잔디구장 사용시 라인마킹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시행하되, 잔디전용 화합물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전용사용자</th> <th>사용기준</th> <th>전용사용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전 체육시설</td> <td>동호인단체</td> <td>1월 (주 1회 이상, 월 4회 이상)</td> <td>50,000</td> <td></td> </tr> <tr> <td>실내 다목적구장, 전용구장</td> <td>65세 이상 노인 동호인단체</td> <td></td> <td>무료</td> <td></td> </tr> </tbody> </table> <p>※ 사용기준 : 1회 = 일반사용과 같음 (실외 조명탑 조명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사용료 포함) ※ 동호인단체 : 장수군체육회·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p>	구 분	사용목적	사용기준	군 민		군민 이외		비고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운동장 및 경기장	트랙경기장	체육활동	1회	무료	무료	15,000	20,000	축구장, 야구장	체육활동	1회	15,000	20,000	30,000	40,000	일반행사	1회	50,000	70,000	80,000	100,000	실내종합체육관	체육활동	1회	20,000	30,000	40,000	50,000	일반행사	1회	40,000	60,000	50,000	70,000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실내	체육활동	1회	10,000	15,000	20,000	30,000	일반행사	1회	30,000	50,000	40,000	60,000	실외	체육활동	1회	무료	무료	15,000	20,000	일반행사	1회	15,000	20,000	20,000	30,000	구 분	전용사용자	사용기준	전용사용료	비고	전 체육시설	동호인단체	1월 (주 1회 이상, 월 4회 이상)	50,000		실내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65세 이상 노인 동호인단체		무료		<p>[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p> <p>1. 사용료 일반</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용목적</th> <th rowspan="2">사용기준</th> <th colspan="2">군 민</th> <th colspan="2">군민 이외</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평 일</th> <th>휴 일</th> <th>평 일</th> <th>휴 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운동장 및 경기장</td> <td>트랙경기장</td> <td>체육활동</td> <td>1회</td> <td>무료</td> <td>무료</td> <td>15,000</td> <td>20,000</td> </tr> <tr> <td rowspan="2">축구장, 야구장</td> <td>체육활동</td> <td>1회</td> <td>15,000</td> <td>20,000</td> <td>30,000</td> <td>40,000</td> </tr> <tr> <td>일반행사</td> <td>1회</td> <td>50,000</td> <td>70,000</td> <td>80,000</td> <td>100,000</td> </tr> <tr> <td rowspan="2">실내종합체육관</td> <td>체육활동</td> <td>1회</td> <td>20,000</td> <td>30,000</td> <td>40,000</td> <td>50,000</td> </tr> <tr> <td>일반행사</td> <td>1회</td> <td>40,000</td> <td>60,000</td> <td>50,000</td> <td>70,000</td> </tr> <tr> <td rowspan="4">다목적구장, 전용구장</td> <td rowspan="2">실내</td> <td>체육활동</td> <td>1회</td> <td>10,000</td> <td>15,000</td> <td>20,000</td> <td>30,000</td> </tr> <tr> <td>일반행사</td> <td>1회</td> <td>30,000</td> <td>50,000</td> <td>40,000</td> <td>60,000</td> </tr> <tr> <td rowspan="2">실외</td> <td>체육활동</td> <td>1회</td> <td>무료</td> <td>무료</td> <td>15,000</td> <td>20,000</td> </tr> <tr> <td>일반행사</td> <td>1회</td> <td>15,000</td> <td>20,000</td> <td>20,000</td> <td>30,000</td> </tr> </tbody> </table> <p>※ 사용기준 : 1회 = 주간 4시간· 조기 3시간· 야간 4시간 이내 (부대시설사용료 별도) ※ 잔디구장 사용시 라인마킹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시행하되, 잔디전용 화합물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전용사용자</th> <th>사용기준</th> <th>전용사용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실내 다목적구장, 전용구장</td> <td rowspan="10">동호인단체</td> <td rowspan="10">1월 (주 1회 이상, 월 4회 이상)</td> <td>50,000</td> <td></td> </tr> <tr> <td>실외 다목적구장, 전용구장(야간)</td> <td>120,000</td> <td></td> </tr> <tr> <td>축 구</td> <td>120,000</td> <td></td> </tr> <tr> <td>야 구</td> <td>100,000</td> <td></td> </tr> <tr> <td>테니스(공설운동장)</td> <td>70,000</td> <td></td> </tr> <tr> <td>테니스 (읍·면)</td> <td>70,000</td> <td></td> </tr> <tr> <td>공 도 장</td> <td>70,000</td> <td></td> </tr> <tr> <td>풋 살</td> <td>70,000</td> <td></td> </tr> <tr> <td>족 구</td> <td>70,000</td> <td></td> </tr> <tr> <td>실내 다목적구장, 전용구장</td> <td>65세 이상 노인 동호인단체</td> <td></td> <td>무료</td> <td></td> </tr> </tbody> </table> <p>※ 사용기준 : 1회 = 일반사용과 같음 (부대시설사용료 포함) ※ 동호인단체 : 장수군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 일반 대관 시 우선 사용</p>	구 분	사용목적	사용기준	군 민		군민 이외		비고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운동장 및 경기장	트랙경기장	체육활동	1회	무료	무료	15,000	20,000	축구장, 야구장	체육활동	1회	15,000	20,000	30,000	40,000	일반행사	1회	50,000	70,000	80,000	100,000	실내종합체육관	체육활동	1회	20,000	30,000	40,000	50,000	일반행사	1회	40,000	60,000	50,000	70,000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실내	체육활동	1회	10,000	15,000	20,000	30,000	일반행사	1회	30,000	50,000	40,000	60,000	실외	체육활동	1회	무료	무료	15,000	20,000	일반행사	1회	15,000	20,000	20,000	30,000	구 분	전용사용자	사용기준	전용사용료	비고	실내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동호인단체	1월 (주 1회 이상, 월 4회 이상)	50,000		실외 다목적구장, 전용구장(야간)	120,000		축 구	120,000		야 구	100,000		테니스(공설운동장)	70,000		테니스 (읍·면)	70,000		공 도 장	70,000		풋 살	70,000		족 구	70,000		실내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65세 이상 노인 동호인단체		무료	
구 분				사용목적	사용기준	군 민			군민 이외		비고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운동장 및 경기장	트랙경기장	체육활동	1회	무료	무료	15,000	20,000																																																																																																																																																																																																		
	축구장, 야구장	체육활동	1회	15,000	20,000	30,000	40,000																																																																																																																																																																																																		
		일반행사	1회	50,000	70,000	80,000	100,000																																																																																																																																																																																																		
실내종합체육관	체육활동	1회	20,000	30,000	40,000	50,000																																																																																																																																																																																																			
	일반행사	1회	40,000	60,000	50,000	70,000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실내	체육활동	1회	10,000	15,000	20,000	30,000																																																																																																																																																																																																		
		일반행사	1회	30,000	50,000	40,000	60,000																																																																																																																																																																																																		
	실외	체육활동	1회	무료	무료	15,000	20,000																																																																																																																																																																																																		
		일반행사	1회	15,000	20,000	20,000	30,000																																																																																																																																																																																																		
구 분	전용사용자	사용기준	전용사용료	비고																																																																																																																																																																																																					
전 체육시설	동호인단체	1월 (주 1회 이상, 월 4회 이상)	50,000																																																																																																																																																																																																						
실내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65세 이상 노인 동호인단체		무료																																																																																																																																																																																																						
구 분	사용목적	사용기준	군 민		군민 이외		비고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운동장 및 경기장	트랙경기장	체육활동	1회	무료	무료	15,000	20,000																																																																																																																																																																																																		
	축구장, 야구장	체육활동	1회	15,000	20,000	30,000	40,000																																																																																																																																																																																																		
		일반행사	1회	50,000	70,000	80,000	100,000																																																																																																																																																																																																		
실내종합체육관	체육활동	1회	20,000	30,000	40,000	50,000																																																																																																																																																																																																			
	일반행사	1회	40,000	60,000	50,000	70,000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실내	체육활동	1회	10,000	15,000	20,000	30,000																																																																																																																																																																																																		
		일반행사	1회	30,000	50,000	40,000	60,000																																																																																																																																																																																																		
	실외	체육활동	1회	무료	무료	15,000	20,000																																																																																																																																																																																																		
		일반행사	1회	15,000	20,000	20,000	30,000																																																																																																																																																																																																		
구 분	전용사용자	사용기준	전용사용료	비고																																																																																																																																																																																																					
실내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동호인단체	1월 (주 1회 이상, 월 4회 이상)	50,000																																																																																																																																																																																																						
실외 다목적구장, 전용구장(야간)			120,000																																																																																																																																																																																																						
축 구			120,000																																																																																																																																																																																																						
야 구			100,000																																																																																																																																																																																																						
테니스(공설운동장)			70,000																																																																																																																																																																																																						
테니스 (읍·면)			70,000																																																																																																																																																																																																						
공 도 장			70,000																																																																																																																																																																																																						
풋 살			70,000																																																																																																																																																																																																						
족 구			70,000																																																																																																																																																																																																						
실내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65세 이상 노인 동호인단체		무료																																																																																																																																																																																																				

현행				개정안				
2. 부대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음향 시설	운동장, 경기장(축구장·야구장)	1회	20,000	마이크 기본 2개 마이크 추가시 - 개당 5,000원 가산	운동장, 경기장(축구장·야구장)	1회	20,000	마이크 기본 2개 마이크 추가시 - 개당 5,000원 가산
	실내 종합체육관·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1회	10,000		실내 종합체육관· 다목적구장 전용구장	1회	10,000	
조명 시설	운동장, 경기장 (축구장·야구장)	1회	20,000	실외 조명탑	운동장, 경기장(축구장·야구장)	1회	20,000	실외 조명탑
	실내종합체육관	1회	10,000		실내종합체육관	1회	10,000	
	실내외 다목적구장·전용구장	1회	실내 5,000 실외 조명탑15,000		실내외 다목적구장·전용구장	1회	실내 5,000 실외 조명탑 15,000	
단·방	실내종합체육관	1회	20,000		실내종합체육관	1회	20,000	
	실내 다목적구장·전용구장	1회	15,000		실내 다목적구장·전용구장	1회	15,000	
중계 방송	체육경기	1회	10,000	중계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필요한 소모품은, 사용자부담	체육경기	1회	10,000	중계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필요한 소모품은, 사용자부담
	체육경기 외	1회	20,000		체육경기 외	1회	20,000	
잡기	공통	1회/ 개당	시원대 1000/ 연대 1000/ 의자 100/ 탁자 1,000	사용자가 보관장소에서 반출· 원위치 반납	공통	1회/ 개당	시원대 1000/ 연대 1000/ 의자 100/ 탁자 1,000	사용자가 보관장소에서 반출· 원위치 반납
* 사용기준 : 1회 = 주간 4시간· 조기 3시간· 야간 4시간이내				* 사용기준 : 1회 = 주간 4시간· 조기 3시간· 야간 4시간이내				

장수군 공고 제 2018 - 64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장 수 군 수

□ 자치법규명

- 장수 군계획조례

□ 일부개정이유

- 「장수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관리하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수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고
- 나. 용도지구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2) 안 제2조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6조 제3항)

□ 주요 개정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안 제9조)
- 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3항)
- 다. 기존의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고 경관지구는 자연·시가지
·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됨에 따라 세분된 경관지구의 건축 규제사항
개정 (안 제33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현 행		개정 후
미관지구	경관지구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라. 기존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보호지구가
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고, 학교시설보호
지구가 특정용도제한구역으로 통합되어 각각의 건축 규제사항 개정
(안 제48조, 제49조)

현 행		개정 후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보호지구	제한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	생태계 보호지구	-
-	학교시설보호지구	-	특정용도 제한지구

마.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규제사항 규정(안 제54조)

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개정(별표)

□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군보게재 익일부터 20일간

○ 기 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분석평가 - 주민복지실
- 규제심사 - 행정지원과
- 법제사전심사 - 기획조정실

□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건설경제과장)
- 팩 스 : 063-350-232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경제과 도시팀 350-2431에 문의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별지서식) 1부.

2.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3.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붙임1】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를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 로, “있다.” 를 “있다(단,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3조제2항” 을 “제3조제2항과 제3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등에 의한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제2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별표1의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는 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가. 도로지적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단, 비가시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00미터. 다만,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70퍼센트 이상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

다. 관광지, 자연휴양림, 유원지, 공원으로부터 사업부지경계까지 100미터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나.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을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종자연경관지구안” 을 “자연경관지구안” 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을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안” 을 “특화경관지구안”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주택” 을 “공동주택 중 아파트”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을 “숙박시설” 로 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경관지구” 를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로, “각호의 1과 같다” 를 “각 호와 같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계획위원회” 를 “군계획위원회” 로,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를 “지역안에서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경관지구 : 4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4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전단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 을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 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구역” 을 “지역” 으로 한다.

제42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 을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 으로, “경우에 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 중 “영 제73조제2항” 을 “영 제72조제2항” 으로,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 를 “군수는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 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 을 “영 제72조제2항” 으로, “미관 지구안” 을 “경관지구안” 으로, “도시미관” 을 “도시경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관지구안” 을 “경관지구안” 으로 한다.

제48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을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의” 를 “영 제80조” 로, “학교시설보호지구안” 을 “특정용도제한지구안”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장례식장” 을 “장례시설” 로 한다.

제49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을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 을 “영 제76조제2호” 로, “공용시설보호” 를 “중요시설물보호” 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2. 방화지구
4. 고도지구

제5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기숙사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표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2017.12.29.) 전에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경사도는 제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p> <p>〈신설〉</p>	<p>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 ----- <u>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u> ----- ----- ----- ----- ----- ----- ---- 있다(단,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 ----- -- <u>제3조제2항과 제3항</u> ---- -----</p> <p>10.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u>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u>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u>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u></p>

<p><u>〈신 설〉</u></p> <p>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 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 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을 건축할 수 없다.</p>	<p><u>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 지역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00미터. 다만,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70퍼 센트 이상 찬성을 얻은 경우 에는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u></p> <p><u>다. 관광지, 자연휴양림, 유원 지, 공원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100미터</u></p> <p><u>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 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 다.</u></p> <p><u>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 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u></p> <p><u>나.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 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u></p> <p><u>〈삭 제〉</u></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p>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14. (생략)</p> <p>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주택, 공관</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p>	<p>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 ----- 자연경관지구안----- ----- -----.</p> <p>1. ~ 14. (현행과 같음) <삭제></p>
---	---

<p><u>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u></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	--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u>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u></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u>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u></p> <p>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2호의 <u>자원순환 관련 시설</u></p> <p>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u>묘지관련시설</u></p> <p>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u>공동주택</u></p> <p>2. ~ 5. (생략)</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u>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u></p> <p>7. ~ 14. (생략)</p> <p>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p>	<p>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u>특화경관지구안</u>----- ----- -----.</p> <p>1.----- ----- <u>공동주택 중 아파트</u></p> <p>2. ~ 5. (현행과 같음)</p> <p>6.----- ----- <u>숙박시설</u></p> <p>7. ~ 14. (현행과 같음)</p> <p><삭제></p>
--	--

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p><u>터를 초과하는 것</u></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 시설에 한한다)</u></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u>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u></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u>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u></p>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2호의 <u>자원순환 관련 시설</u></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u>묘지관련시설</u></p> <p>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용도 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 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u></p>	<p>〈삭 제〉</p>
---	--------------

<p><u>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 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의한다.</u></p> <p>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경관 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 가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u>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p> <p>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u></p>	<p>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자연경관 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u>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u> <u>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u></p> <p>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p> <p>-----</p> <p>-- <u>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u> -----</p> <p>----- <u>각 호와 같다.</u> -----</p> <p>-----</p> <p>----- <u>군계획위원회</u>-----</p> <p>----- <u>지역안에서는</u> -----</p> <p>-----</p> <p>-----.</p>
--	---

<p><u>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u></p> <p><u>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u></p> <p><u>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u></p> <p><u>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u></p> <p><u>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u></p> <p>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p>	<p><u>1. 자연경관지구 : 4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u></p> <p><u>2. 특화경관지구 : 4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 ----- ----- -----</p>
--	---

<p>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p> <p>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p> <p>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p> <p>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p> <p>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p> <p>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p>	<p>1. 자연경관지구 : 4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p> <p>2. 특화경관지구 : 4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 ----- ----- ----- -----</p>
---	--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

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갇셈,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 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 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 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p>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 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권자가(군수)가 차량출입 금지를 위한 블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p>〈삭 제〉</p>
---	--------------

<p>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 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p> <p>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13. (생략)</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8호의 장례식장</p> <p>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13. (생략)</p> <p>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p>	<p>②경관지구안----- ----- ----- -----.</p> <p>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 ----- 특정용도제한지 구안-----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 장례시설</p> <p>제49조(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 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 중요시설물보호 -- ----- ----- -----.</p> <p>1. ~ 13. (현행과 같음)</p>
---	--

<p>없다.</p> <p>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 시설</p> <p>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 시설</p> <p>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p> <p>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 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p>	<p>제54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p> <p>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관람장</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p>
--	---

<p><u>17호의 공장</u>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u>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u> <u>시설</u>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u>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u> <u>설</u>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u>28호의 장례시설</u></p> <p>2. <u>일반공업지역</u> : 준공업지역에 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u>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u>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u>2호 가목의 아파트</u>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u>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u> <u>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u>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u>11호의 노유자시설</u></p> <p>3. <u>계획관리지역</u>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u>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u> <u>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u> <u>점·제과점(별표 20 제1호</u> <u>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u></p>	
--	--

<p>제55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p>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p>	<p>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p> <p>〈삭 제〉</p> <p>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p>
--	---

<p>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락지구</u> 2. <u>리모델링지구</u> 3. (생 략) 4. <u>보존지구</u> 5. <u>문화지구</u> 6. <u>보행자우선지구</u> 7. <u>경관지구</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u> 2. <u>방화지구</u> 3. (현행과 같음) 4. <u>고도지구</u> <삭 제> <삭 제> <삭 제>
<p>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p> <p>①、② (생 략)</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④ ~ ⑥ (생 략)</p>	<p>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기숙사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임야는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서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제2조(개발행위허가 표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2017.1 2.29.) ----- ----- ----- 허가----- ----- ----- ----- ----- 따른 다. 단,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경사도는 제외한다.</p>
---	--

【붙임3】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04.18) - 2018.04.19. 시행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 ⑤ 생략

부칙 <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 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존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⑧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29)- 2018.04.19. 시행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 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

17.12.29.)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12.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4.10.>

라.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

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 ⑦ 생략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p>(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p> <p>(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부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9조, 제94조 및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미관지구	경관지구
1. 중심지미관지구	1. 시가지경관지구
2. 일반미관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2. 특화경관지구

제4조(최고고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보존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보호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보존지구	보호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3. 생태계보호지구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시설보호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
1. 공용시설보호지구	1. 중요시설물보호지구
2. 향만시설보호지구	
3. 공항시설보호지구	
4. 학교시설보호지구	2. 특정용도제한지구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 ⑤ 생략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연구과 공고 제 2018 - 01호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장 수 군 수

□ 자치법규명

-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 제정이유

- 장수사과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사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주체별 역할(안 제1조 ~ 제3조)
- 고품질 사과 생산·유통 및 지원(안 제4조 ~ 제10조)
 - 고품질 사과 생산, 유통질서 확립,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 장수사과 발전위원회(안 제11조 ~ 제16조)
 - 구성 및 임기, 위원회 기능, 위원 위·해촉 등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전 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규제심사 : 비 대상
- 성별영향평가 : 대상

□ 의견제출

-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55 장수군수(과수특작연구과)
 - 팩 스 : 063-351-5392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수특작연구과 과수지원팀 350-5321에 문의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안

장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사과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사과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과 재배 농가"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사과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사과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사과재배 농가(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5명 이상이 모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3. "장수사과"라 함은 장수군에서 농업인이 과원 운영을 통하여 재배·생산·유통되는 사과를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과산업 시책 전반사항을 종합 조정하며, 사과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2. 제11조에 따른 장수사과 발전위원회는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세부과제 발굴, 시책 수립 및 주요 사업과 그 밖의 발전사항을 심의·자문한다.
3.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품질 사과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

제2장 고품질 사과 생산·유통 및 지원

제4조(고품질 사과 생산) ① 군수는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영농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도록 노력한다.

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2. 제초제 안 쓰는 과원 기반 구축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3.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우수한 농산물 생산
4.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조성 시 보증 우량 무병묘목 식재 등 과원 경제수명 지속화 유지
5. 재해예방을 위한 과원 규격 시설 설치 준수 및 사전 예방활동 등

제5조(유통질서 확립) ① 군수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지원과 농업인 현장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장수사과 출하박스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와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생산자 단체·농업인은 사과를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비 상품과·속박이 유통 행위 금지
2. 정량·정품 출하
3. 출하박스(공동 디자인 포함)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
4. 우수 농산물(GAP) 인증 및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록

제6조(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시설 사업
 2. 장수사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행사 및 브랜드·포장재 개발 사업
 3. 사과 자조금 조성 사업
 4. 장수군 관내 유통센터(산지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등) 기반 시설 사업
 5. 농업인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사업
 6. 농업인 소득창출 및 판로 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
 7. 그 밖의 사과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 ②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 사업자의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수 사항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교부금을 교부 받은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이하 “보조 사업자”라 한다)은 고품질 사과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2. 비 상품과 · 속박이 출하 행위 금지
3. 비 출하박스 출하 행위 금지
4. 장수사과 공동 디자인 사용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품질관리사 운영) ① 군수는 장수사과 고품질 안정생산과 사과 재배 기술 평준화 및 향상을 위하여 장수사과 품질관리사를 운영한다.

- ② 품질관리사는 사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영농상담 및 기술 지도를 한다.
- ③ 품질관리사는 과원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보완 · 해결 등 장수사과 발전에 기여한다.

제9조(품질관리) ① 장수사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경우에는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 ② 군수는 고품질 사과생산 및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와 농가에 대하여 현장 컨설팅 및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이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처분) 군수는 제7조제2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장수사과 발전위원회

제1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장수사과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3. 위원 :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장수사과영농조합대표, 한국사과협회장 수군지회장, 사과여성연구회장 등 생산자 단체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과수특작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공무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사과재배 선도농가 등 생산, 유통, 가공, 정책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는 과수지원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과 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과산업 발전과제 발굴, 시책 수립 및 주요 추진사항
2. 사과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그 밖의 사과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요하는 사항

제13조(위원 위·해촉) ① 군수는 제11조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규격 : A4

위 촉 장

성 명 : 0 0 0

주 소 : 장수군 000읍 · 면 000로 · 길 000번지

귀하를 장수사과 고품질 과실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장수사과품질관리사로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위촉 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장 수 군 수 0 0 0

장수군 훈령 제550호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8년 7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군은 공무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제6항제6호 중 “(신원조사용) 3부” 를 “(신원조회용)2부”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 근로자 정수표(제6조제3항 관련)

부서별	합계	일반근로자											청원경찰	원림보직원	
		소계	담순노무원	행정사무보조원	기술인부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식당관리원	기술원, 정보원,농수산 군공요원,군전차운전	청소년지도사	수영강사	안전요원	보건의료보조원					
합 계	288	263	21	38	1	19	1	2	2	20	28	7	124	23	2
본청	소계	141	125	14	21	1	1	1	0	0	2	7	78	13	2
	기획조정실	4	4		3		1								
	주민복지실	46	46	1	1			1					43		
	행정지원과	13	10	5	2	1	1						1	3	
	재무과	2	2		2										
	민원과	7	7		5								2		
	환경위생과	16	12	2	2						2		6	4	
	농업정책과	6	5		2								3	1	
	축산과	14	12		1								11	2	
	산림녹지과	22	17	6									11	3	2
건설경제과	9	9		1							7	1			
안전재난과	2	2		2											
의회	의회사무과	4	3		2								1	1	
직속기관	소계	63	61	2	3	0	13	0	0	0	20	0	23	2	0
	보건사업과	16	14	2						7			5	2	
	의료지원과	19	19							13			6		
	농업기술센터	17	17		1		9						7		
과수특작연구과	11	11		2		4						5			
사업소	소계	42	35	5	4	0	4	0	2	2	0	2	16	7	0
	문화체육 관광사업소	35	28	5	4				2	2			15	7	
	환경자원 사업소	7	7				4				2		1		
읍면	소계	38	38	0	8	0	0	0	0	0	24	0	6	0	0
	장수읍	11	11		2						7		2		
	산서면	5	5		1						2		2		
	번암면	4	4		1						3				
	장계면	9	9		1						6		2		
	천천면	3	3		1						2				
	계남면	3	3		1						2				
계북면	3	3		1						2					

1. 개정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공무원 근로자의 신원조사 의무규정을 삭제함.

공무원 근로자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원조사 의무규정 삭제(제9조제5항 및 제6항제6호)

나. 공무원 근로자 정원 조정(별표 1)

- 공무원 근로자 정원 증 : 287명 → 288명

[행정지원과 기술인부(나군) : 군수 전용차량 운전 1명 증]

장수군 고시 제 2018 - 5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개간 사업시행계획 승인 사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규정』 제12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장 수 군 수

1. 사업목적 : 농지조성
2. 사업내용 및 구역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단위: 천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승인면적 (㎡)	사업 시행자	공사비 예정액	사업기간	비고
읍·면	리								
장수	노곡	산12-1	임야	67,835	4,970	이대성	33,814	승인일로부터~ 2019. 04. 30.	

3. 사업의 효과 :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4. 지형도면 : 실음생략

장수군 고시 제 2018 - 5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서류는 장수군청 민원과에 비치하고 일반군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장 수 군 수

1. 사업명 : 장수 부경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 사업시행자
 -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경주택 주식회사 김종진
 - 나.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 8길 83. 1층
3. 사업위치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672번지의외 5필지
4. 사업내용
 - 가. 대지면적 : 4,914㎡ → 4,853㎡ (감 61㎡)
 - 나. 건축면적 : 773.9488㎡
 - 다. 연 면 적 : 9,327.8454㎡ → 9,322.4074㎡ (감 5.438㎡)
 - 라. 건축규모 : 아파트 1동, 지상 14~18층, 90세대
 - A형 단위세대 84.9812㎡ - 34세대,
 - B형 단위세대 76.4015㎡ → 76.4415㎡ (증0.040㎡) - 15세대
 - C형 단위세대 76.6951㎡ → 76.7231㎡ (증0.028㎡) - 15세대,
 - D형 단위세대 67.7531㎡ → 68.0401㎡ (증0.287㎡) - 26세대
 -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바.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사. 사 업 비 : 12,960,890천원

5. 의제내역

-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마. 배수설비설치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경미한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	장수 하비지구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672번지 일원	8,038	감) 61	7,977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변경	4	장수 하비지구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672번지 일원	8,038 → 7,977 감) 61	• 사업부지 내 지장물 면적 제적을 위한 지적 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3,646,225	-	533,646,225	100.00	
도 시 지 역		5,474,447	-	5,474,447	1.03	
주거지역	소 계	1,231,139	-	1,231,139	0.23	
	제1종일반주거지역	1,057,302	증) 61	1,057,363	0.19	
	제2종일반주거지역	92,047	감) 61	91,986	0.02	
	준주거지역	81,790		81,790	0.02	
상업지역	소 계	188,800	-	188,800	0.04	
	일반상업지역	188,800	-	188,800	0.04	
공업지역	소 계	81,669	-	81,669	0.02	
	준공업지역	81,669	-	81,669	0.02	
녹지지역	소 계	3,972,839	-	3,972,839	0.74	
	보전녹지지역	228,308	-	228,308	0.04	
	생산녹지지역	752,460	-	752,460	0.14	
	자연녹지지역	2,992,071	-	2,992,071	0.56	
도 시 외 지 역		528,171,778	-	528,171,778	98.97	
관리지역	소 계	173,319,261	-	173,319,261	32.47	
	보전관리지역	67,667,153	-	67,667,153	12.68	
	생산관리지역	62,048,421	-	62,048,421	11.62	
	계획관리지역	43,603,687	-	43,603,687	8.17	
농림지역		337,736,515	-	337,736,515	63.29	
자연환경보전지역		17,116,002	-	17,116,002	3.21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변경 사유
1	장수리 672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8,038 → 7,977 감) 61	192.10	• 사업부지 내 지장물 면적 제척을 위한 지적 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20	중로3-1, 장수리 670-6도	소로3-8, 장수리 701천	일반 도로	농촌 공사	전북고시 제99-309호 (99.06.21)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213	소로1-4, 장수리 701천	중로3-1, 장수리 559-1제	일반 도로	장수천	전북고시 제93-31호 (93.02.08)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1	1	8,038 → 7,977 감) 61	1-1	장수리 672 일원	4,914	감)61	4,853	공동주택용지
			1-2	장수리 670-6, 701 일원	1,853	-	1,853	도로용지
			1-3	장수리 670-6 일원	277	-	277	공공용지 (보도, 녹지대)
			1-4	장수리 701 일원	994	-	994	주차용지

5. 차량진출입에 관한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내 용	
1-1	차량 동선	· 주거용지 서측(소로1-4호선)에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1개소 지정	· 진출입구(3개소)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1-2	차량 동선	· 도로용지 동측(소로1-4호선)에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1개소 지정	
1-4	차량 동선	· 주차용지 남측(소로3-8호선)에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1개소 지정	

6.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지구단위계획결정	법규정 (군계획조례)	건축계획		
					기정	변경	
1	장수리 672 일원	용 도	지정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허용용도(령) 공동주택	-	-
			권장 용도	· 해당사항 없음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25% 이하	· 60% 이하	· 16.32%	· 15.95%	
		용적률	· 200% 이하	· 250% 이하	· 198.13%	· 192.10%	
		높 이	· 18층 이하	· 18층 이하	· 18층이하	· 18층이하	

7.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획지에 관한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인가내용을 준수함
- 차량의 진,출입은 결정도면에 표시부분만 허용함

8.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9.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붙임생략’

장수군 공고 제 2018 - 611호

장수군 공인 등록(신조) 공고

장수군 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인등록(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1. 등록(신조)사유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연구과 일상경비 지출
2. 신조 공인 최초사용일 : 2018. 6. 18.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규격및서체	인 영
신조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연구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 정방형	

장수군공고 제 2018 - 631호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지정일자 : 2018년 05월 14일
- 지정내역

위 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이해관계인	비고
장수읍 노곡리 614	13.5m	4.0m	16.0m ²	고문재	동의

2018년 6월 20일

장 수 군 수

군보발행안내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